

의안번호	제 38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발 의 자	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오영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2
----------	-----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의자 : 오영탁, 이수완, 윤남진,
김기창, 연종석, 이상식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지원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비용지급 대상, 비용의 신청 및 지급,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라. 조례안 예고 : 2020. 2. 26. ~ 2020. 3. 4.(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원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제2조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자가 지원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 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방활동 지원 개요	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		
	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금액(청구금액) 금 원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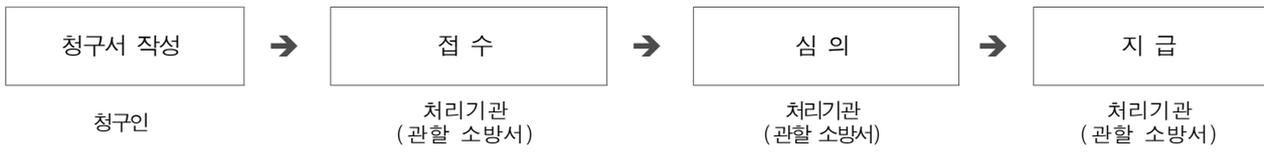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5.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본조신설 2013. 5. 22.]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지원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비용지급 사유 발생 시 '20년 본예산에 편성한 민간자원 재해보상금 활용」
✓ '19년 민간자원 동원 비용 지급 : 35건, 29,430천원 / '20년 예산(42,000천원)
※ 견인비용 지급으로 '20년 예산 부족 시 추경예산 편성 활용
✓ 최근 5년간 도내 견인차 활용 주·정차 차량 이동사례 없음.

3. 관련조문

제3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 나. 추계의 전제 : 해당사항 없음
- 다. 추계결과 : 해당사항 없음
- 라. 재원조달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출	0					
소요예산(천원)	0					